

**THEHITE.**

#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


**2011년 2월 22일**

#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
## 1. 개요

### (1) 내 용

-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,
-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 [상법 제415조의 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'감사인선임위원회'로 본다]의 승인을 얻어야 함

### (2) 관련 근거

- **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**

## 2. 외부감사인 선임 대상

(1) 대 상 : **한영회계법인**

### (2) 법인개요

- 대표이사 : 공인회계사 권승화

#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
- 주된사무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 -2
- 설립 일자 : 1982년 4월 1일
- 자본 : 18,533,000,000원
- 공인회계사수 : 719명 (수습공인회계사 82명포함)

## 3. 선임 사유

- (1) 한영회계법인은 조직화된 국내 굴지의 대형법인이며, 세계적인 대형 회계법인으로서 Big4의 하나인 Ernst & Young의 Member Firm 임.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는 당사의 입장에서 당사의 경영방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직화된 대형 회계법인임.
- (2) 젊고 유능한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되어 회사 업무 전반(회계, 법률, 세무, 경영 컨설팅 등)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.
- (3) 경영 컨설팅 부분에 경험이 많은 유능한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으며, 당사의 향후 전산화 및 업무 표준화를 위한 시스템 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, 회계, 세무, 기타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있는 영화조세통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.

#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
## 4. 감사인 선임 보고

### (1) 선임 보고

-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
  - 아래 사항 중 한가지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함
    1.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. 이 경우 통지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.
    2.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. 이 경우 공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.
- 당사는 위 법령 및 당사 정관에 의거 2011년 2월 22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

### (2) 관련 근거

-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

# 관련 법령
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	동법 시행령
<p><b>제4조(감사인의 선임)</b></p> <p>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(監事)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(「상법」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. 이하 "감사인선임위원회"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「상법」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(이하 "정기총회"라 한다)에 보고하거나 <b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b>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3조의2(감사인선임위원회 등)</b></p> <p>~</p> <p>⑥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주주에게 하는 통지 또는 공고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. 이 경우 통지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로 한다.</li> <li>2.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. 이 경우 공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.</li> </ol>